

교습비등 고지

년 월 일 현재

일련 번호	교습과목	교습비	징수단위 (월, 분기)	기타경비					
				모의고사비	재료비	피복비	급식비	기숙사비	차량비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학원설립·운영자 또는 교습자 (서명 또는 인)